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

검 토 보 고

< 집단분쟁에서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 허용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96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6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6
2. 제정안에 따른 집단소송 도입의 필요성	8
3. 주요 조문별 검토	15
가. 제1장 총칙에 대한 검토	15
나. 제2장 소송절차에 대한 검토	37
다. 제3장 분배절차에 대한 검토	42
라. 제4장 벌칙에 대한 검토	48
마. 부칙에 대한 검토	5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 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 증권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하여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이에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다.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효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 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7조).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안 제29조 및 제30조)

카.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

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6조).

하.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권리확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2조).

거.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2조).

너.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
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최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 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함.

이에 제정안은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집단소송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①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②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③ 구성원 50인 이상 등의 소송허가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④ 소송절차에서 직권증거조사 및 주장·답변의 특칙 등이 적용되며, 손해배상액 산정의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⑤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부에게 효력이 미치고, ⑥ 대표당사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실행하여 취득한 금전 등은 법원이 선임한 분배

관리인을 통해 분배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 제정안 체계 및 주요내용 >

쟁점	조 문	주 요 내 용
대상	제2조제1호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제3조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변호사 강제주의	제4조	○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소송개시	제7조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법원의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0조	○ 총원의 이익 대표하기에 적합한 자 선임
소송허가 요건	제11조	○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소송절차	제2장 제29조~ 제40조	○ 증거조사에서의 특칙 - 직권증거조사,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신문,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문서제출 명령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 ○ 합리적 방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결의 효력	제27조 제39조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침
분배절차	제3장 제41조~ 제61조	○ 승소판결시 대표당사자는 권리를 실행하여 금전 등을 취득하여 대법원규칙에 따라 보관 ○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에 분배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 인가받아 그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 ○ 구성원은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 후 분배금 수령 ○ 수령기간 지난 후 잔여금은 공탁하며 분배종료보고서 제출된 경우 잔여금 국고 귀속
벌칙 등	제4장 제62조~ 제66조	○ 대표당사자, 분배관리인 등에 대한 배임수재, 증재죄, 몰수·추징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

2. 제정안에 따른 집단소송 도입의 필요성

가. 현행법에 따른 해결방안의 한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에 대하여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 이외에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민사소송법」 상 ① 다수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제65조1)’이나, ②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선정당사자 제도(제53조2)’가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같이 피해액이 소액이면서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³⁾ 기존의 소송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인데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승소 여부도 불확실하며, 소송비용,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기피하게 됨. 그

1)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3) 2008년 옥션 1000만명, 2011년 넥슨 1320만명과 네이트 3500만명, 2014년 KT 1170만명 등의 사건이 있었음. 특히 2014년 1월 KB국민카드 사건으로 53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였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이지만 그 결과도 각 소송마다 달랐음. KT 고객센터 해킹사건의 경우 법원은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은 1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반면 옥션의 경우 사건발생 후 7년간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은 "옥션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여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했음.

결과 사업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사 사건의 재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

나.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구성원 중 1인 또는 다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와, 개별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는 단체소송제도가 논의되었음.

우리나라는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관련 분쟁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도입하였고, 2008년 「소비자기본법」에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시행 중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처럼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배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하는(제외신고형, Opt-out방식) 집단소송을 도입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⁴⁾ 피해자의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소송유형	의 미	입법례
집단소송	○ 다수인에게 집단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 ○ 소송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외 신청을 한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 모두에게 미침(Opt-out 방식) ○ 영국 등의 경우 미국과 달리 참가신청을 한 피해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인정함(Opt-in 방식) ○ 손해배상의 청구에 중점	○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 대표적임 (그 외 캐나다의 Class Proceeding, 영국의 Group Action, 중국의 대표자소송, 독일의 표본소송절차, 일본의 선정당사자 추가제도·대규모소송제도 등) ○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 ○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음(2005. 1. 시행)
단체소송	○ 공공이익이 침해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원고가 되어 그 단체이름으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 ○ 위법행위의 금지청구(부작위청구)에 중점	○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대표적임 ○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단체에 의한 소송을 허용 ○ 우리나라에는 「소비자기본법」 제4절 제70조 이하에 도입되어 있음(2008. 1. 시행)

4)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외국의 입법례

미국의 경우 일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수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허용하면서 원고 승소시 피고 측이 출자한 자급에 의한 조성된 구제기금을 각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며,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부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개별법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집단피해 구제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체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따라 ‘참가신고형(Opt-in 방식)’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2015년 공정거래법 분야에 한해 미국식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제도를 도입하였음.

일본의 경우 1차적으로 소비자 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의무확인 후 2차적으로 간이확정절차를 거쳐 채권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2단계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음.

라. 제정안에 따른 집단소송의 장단점 검토

제정안에 따른 집단소송은 미국식의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집단소송 제도와 유사하게 집단소송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미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음.

(1) 장점

○ 소송경제 및 권리구제의 용이성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원고 측에서는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피고 측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수많은 개별 소송들을 개별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집단소송에 대한 방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소송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불법행위의 반복 억제 및 예방 효과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전에는 피해를 입고도 제소가 힘들었던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배상액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 등 사업자의 부적절한 행위 반복을 억제하게 되어 불법행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부정 기업의 퇴출 등 장기적 관점의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건강 등을 해칠 수 있는 부적격 제품 등을 판매하는 부정 기업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기업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2) 단점

○ 집단소송 비참여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문제

미국식의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집단소송방식은 소송대상에 관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환경분쟁 등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 체계나 처분권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남소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 증가

집단소송은 개별 당사자들의 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부담은 적은 반면 변호사는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남소의 가능성이 있고,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소송대상에 따른 구성원 특정의 어려움

집단소송에 있어서 집단인 원고를 특정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쉬운 분쟁에서는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이 적합할 수 있고, 환경분쟁 등과 같이 피해자의 범위 및 정도가 각기 달라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분쟁에서는 참가신고형(Opt-in) 방식이 적합할 수 있는데, 집단소송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모두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으로만 집단소송을 허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음.

마. 소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법은 한계가 존재하고,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집단적 분쟁 해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목적과 함께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주요 조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에 대한 검토

(1) 집단소송의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집단적인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단적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인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 구제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고하여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집단소송의 정의 등(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총원”이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총원을 위하여 소의 제기,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란 구성원이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안은 적용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집단소송”의 정의를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집단소송이 남발될 우려를 고려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허가요건으로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⁵⁾.

5)안 제11조(소송허가요건) ① 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2.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3.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4.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②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정안은 집단소송을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일괄하여 효율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집단소송 대상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음. 또한 총원의 정의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전원”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보임.

반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정의를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원의 정의 또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填)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2. “총원”(總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填)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적정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 및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전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⁶⁾.

6) 참고 ; 공동소송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전속관할(안 제3조)

제3조(관할)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재판적이란 안 제5조7)에 따라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사람인 경우 주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의미함⁸⁾.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은 내용임⁹⁾.

다만, 집단소송에서 피고가 다수인 경우 전속관할이 어디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 중 일부에 대해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7) 안 제5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8)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10) 참고;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송대리인의 선임(안 제4조)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민사소송법」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¹¹⁾.

집단소송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수행 과정에서 효과적인 주장 및 증거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소송이 잘못 수행될 경우 기판력으로 인하여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고하여 집단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11)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집단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집단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이 법은 집단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두 법률 간 우선 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단소송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므로 일반법으로 볼 수 있는 제정안(집단소송법안)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¹²⁾ 이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데 제정안이 우선 적용된다면 기존 절차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6) 소의 제기 및 소송목적의 값(안 제7조)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로 하여금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집단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소송목적의 값¹³⁾은 기본적으로 5천만원이 됨¹⁴⁾¹⁵⁾.

13)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1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대법원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1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230,000원에 불과할 수 있음.

그러나 집단소송은 대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성격상 청구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소송일 것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액으로 하여 인지액을 산출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고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지액 상한을 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집단소송의 청구금액은 통상 일반소송에 비하여 거액일 것이므로 인지액 상한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인지액 상한 규정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소액의 착수비용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기획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지액 상한을 정해야 할 것임.

참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인지액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하고 있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¹⁶⁾를 준용한다.

16)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

(7)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제정안 제8조와 제9조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나열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249조¹⁷⁾에서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총원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 할 것임.

다만, 제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달리 소송허가신청서 기

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7)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재사항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외 첨부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승소 후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분배금에서 소송대리인의 보수도 공제되므로 피해 배상 예상액에 비해 과도하게 많거나 불합리한 변호사 보수약정은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반할 수 있는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고하여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추가하고 소송대리인 관련 서류 또한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③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2. 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18)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 원고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임.

(8) 소송허가요건 및 절차(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1조(소송허가요건) ① 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2.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효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3.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4.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②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2조(소송허가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안 제11조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구성원 요건과 같이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등의 허가 요건을 두고 있는데,¹⁹⁾ 제정안의 적용

1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범위가 특정 법률 위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50인 이상의 구성원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송 경제 측면이나, 지나친 남소를 방지한다는 점,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1개월 연장 가능) 그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사실상 집단소송법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이 피고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경우가 많아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3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9) 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안 제13조)

제13조(경합된 허가신청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동일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병합심리(併合審理)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제정안은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집단소송 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제1항),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 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관계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집단소송은 여러 개의 단체 혹은 다수의 피해자 등이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시간과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 집단소송이 체계적,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리 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병합심리를 하도록 하되,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심리할 법원을 정하도록 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²⁰⁾

20) 현행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併合審理)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0) 허가결정(안 제14조) 및 불허가결정(안 제16조)

제14조(허가결정) ①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主文)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구성원이 제외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
9. 제15조에 따른 비용의 감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6조(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정안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안 제14조제3항),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으며(안 제16조제1항),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²¹⁾.

21)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민사소송법상 항고(제439조)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 항고를

집단소송 허가결정, 총원 범위 또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제정안 제26조에서는 총원 범위 변경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²²⁾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고하여 집단소송 허가 결정과 총원 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모두 즉시항고²³⁾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即時抗告)할 수 있다.

통한 불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규정을 살펴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제4항 대표당사자 선임 결정, 제14조제3항 총원 조정 결정, 제19조제3항 대표당사자 허가 결정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22)안 제26조(총원의 범위의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3)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1장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11) 소송비용(안 제15조)

제15조(소송비용)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對訴), 대표당사자의 자격,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정안은 법원이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對訴), 대표당사자의 자격,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집단소송의 경우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원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집단소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특히 법원이 소송비용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사건의 공익성을 규정한 것은 소송이 개인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개인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대소(對訴)를 고려하는 것은 상호 소송의 상황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대표당사자의 자격을 고려하는 것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부족할 경우 이 상황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소송비용의 감면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감면을 의미할

뿐 법원의 소송 운영 비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결국 감면된 비용은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바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비용 감면 규정을 두지 않고 남소 방지 등을 위해 소송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비용의 예납 규정을 두고 있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공고·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12)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및 일부변경(안 제20조 및 제22조)

제20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대표당사자의 일부 변경)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제정안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고(안 제20조제1항), 이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되거나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는 경우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

이는 잔존 대표당사자의 소송 수행으로 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잔존 대표당사자와 구성원이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이익 또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⁴⁾.

24) 구성원이 잔존 대표당사자의 변경 등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잔존 대표당사자의 소송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제외신고와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안 제27조 및 제39조)

제27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집단소송의 기관력 범위와 관련하여 소송에 참가신청을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기관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참가신고형, Opt-in 방식)과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기관력이 미치되 기관력을 받지 않겠다는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기관력이 미치지 않고 개별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제외신고형, Opt-out방식)이 있음.

제정안은 확정판결이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소송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

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피해 구성원들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참가신고형(Opt-in)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⁵⁾.

참고로, 영국의 경우 2000년 민사소송규칙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면서 원고 확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참가신고형(Opt-in) 방식을 두었으나, 2015년 공정거래법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부당공동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위반에 한정해서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을 도입하였음.

25) 증권관련 집단소송 또한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증권 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내역 등에 대한 특징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상의 제한이 없는 집단소송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제2장 소송절차에 대한 검토

(1) 주장·답변의 특칙(안 제31조)

제31조(주장·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대표당사자 즉 원고는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증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원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주장책임을 완화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변론주의와 달리 주장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⁶⁾.

26) 민사소송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변론에서의 사실상의 주장에 의해 제출되어야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

(2) 석명 등의 특칙(안 제32조)

제32조(석명 등의 특칙) ① 법원은 상대방이 제31조제2항에 의한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37조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은 상대방이 법원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송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²⁷⁾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석명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변론주의²⁸⁾ 및 석명권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27)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8) 변론주의(辯論主義)란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임.

(3) 문서제출명령, 검증·감정 및 증거보전·개시의 특칙(안 제33조~ 제35조)

제33조(문서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문서의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 및 피고는 법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①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본안의 소가 허가되기 전이라도 민사상 다툼에 관련된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개시명령을 받은 자가 증거의 개시 등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정안은 「민사소송법」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달리 법원이 본안의 소가 허가되기 전이라도 민사상 다툼에 관련된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 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5조제2항).

이는 본안 소송 허가 전에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피고 측이 증거를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또한 제정안은 문서 제출이나 검증·감정 방해, 증거제시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문서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한 경우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며(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안 제34조제2항), 증거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35조제3항).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49조²⁹⁾).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따라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문서의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하거나 검증·감정을 방해하거나 증거제시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자유심증 원칙에 반하고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9)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제3장 분배절차에 관한 검토

(1) 분배절차 개관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송 분배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분배절차 부분을 대부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분배절차를 실제 운용한 사례가 적어서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수정·보완되지 않고 최초 도입된 분배절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제정안 분배절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원은 본안 소송절차에서는 피해소비자 개개인의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구성원 전체의 총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함.

② 제1심 수소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분배법원에서 별도의 분배관리인이 선임되어 분배법원의 감독에 따라 분배절차를 진행함.

③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고 이를 분배관리인이 확인,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구성원은 확인결과를 통지받은 후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권리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권리확인신청에 대하여 법원

은 결정으로 재판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④ 권리를 확인받은 구성원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권리신고기간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공탁된 분배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⑤ 분배관리인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잔여금은 국고에 귀속함.

(2) 분배계획안의 인가(안 제49조)

제49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
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
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정안의 분배절차 중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가장 큰 차이
는 분배계획안 인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구
성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것임(안 제49조 제3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분배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배계획안이 인가되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³⁰⁾, 제정안은 당사자 등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분배절차가 즉시항고로 정지됨으로써³¹⁾ 분배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신속한 절차의 진행만큼 정확한 분배도 중요하므로, 제정안은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배의 정확성 및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3) 분배계획의 공고 및 변경(안 제50조 및 제51조)

제50조(분배계획의 공고) 법원이 분배계획안을 인가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51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1) 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분배계획안 인가 및 변경 결정을 구성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제목은 “공고”로 표현하고 있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조제목 및 조문 내용 모두 “고지”로 규정하면서도³²⁾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8조는 고지방법을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로 규정하고 있는데³³⁾, 이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지 즉 개별통지가 아니라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고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임. 또한 실제 집단소송 운영과정에서 ‘총원’의 개별구성원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분배계획안에 따른 분배절차에서 권리신고로 확인되는 시점이기도 함.

따라서 법원이 분배계획안을 인가한 후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을 “고지”로 규정할지 “공고”로 규정할지 검토하여 조제목과 조문 내용을 일치

3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3)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8조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①법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⁴⁾.

참고로 공고는 특정 정보나 절차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이며, 고지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통지로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4) 잔여금의 처분(안 제58조)

제58조(잔여금의 처분) ①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당시의 잔여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잔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분배 잔여금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³⁵⁾과 달리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분배 잔여금 처분방법으로는 피고에게 반환, 구성원들에게 재분배, 국고귀속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제정안의 분배금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전보 차원에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구

34) 분배계획안을 인가하여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고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공고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임.

3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5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성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것 또한 실손해 전보라는 사법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분배금의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잔여금이 있는 경우 국고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취지³⁶⁾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6)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정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2. 2., p.20.

라. 제4장 벌칙에 대한 검토

(1) 배임수재 등(안 제62조~제64조)

제62조(배임수재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63조(배임증재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64조(몰수·추징) 제62조 및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정안은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요구·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62조).

반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당사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한 경우, 수수액 등에 따라 처벌형량이 다르며,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³⁷⁾.

< 배임수재 처벌형량 >

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병과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병과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집단소송에서의 배임수재 가중처벌 규정을 둔 것은³⁸⁾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집단소송의

3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0조(배임수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참고;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부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처벌형량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과태료 및 감치명령(안 제65조 및 제66조)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증·감정의 목적물에 대한 현상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66조(감치명령) ①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명령 또는 촉탁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감치에 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65조제2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 등을 거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는 검증·감정의 목적물에 대한 현상보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검증·감정 목적물의 현상보전명령을 따르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과 법적 해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마. 부칙에 대한 검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적용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³⁹⁾을 참고하여 법 시행 후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적용시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부 칙 <법률 제7074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8조·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3. 10.>

③(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과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3. 10.>

1. 이 법 시행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액 등의 과대 계상, 과소 계상 또는 누락이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의 금액 등이 이 법 시행 후 재무제표 작성 시 그대로 반영되어 변동이 없거나 과대 계상된 금액 등의 감소, 과소 계상된 금액 등의 증가 또는 누락된 금액 등의 계상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등을 「증권거래법」 제8조·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일 것

⑤(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3. 10.>

참고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집단소송법안 주요내용 비교

내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집단소송법안
적용범위		증권 관련 분쟁	분야 제한 없음
소송 비용	상한	인지액 상한 5천만원	소송목적의 값 계산할수 없는 소송으로 봄
	감면 규정	-	사건의 공익성,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고려 감면 가능
관할		피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좌 동)
소송대리인 선임		자격 제한 규정 있음	-
소송허가신청서		변호사 보수 약정 기재 및 소송대리인 서류 첨부	-
소송허가요건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피고 발행증권 총수 1만분의 1 이상	구성원 50인 이상
		법률상·사실상 쟁점의 공통	(좌 동)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한 수단일 것	(좌 동)
소송허가절차		-	3개월 이내 허가(1개월 연장) 기한 내 미결정시 허가 간주
소송허가결정 등 불복		허가, 총원 조정, 불허가결정 즉시항고	허가결정 항고, 총원 조정 결정 불복 불허, 불허가결정 즉시항고
대표당사자 요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	(좌 동)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외신고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판결 효력 미침	(좌 동)
주장책임 경감		-	개략적으로 주장가능
소송 전 증거개시		-	본안 소송 허가 전 증거개시
석명불응시 특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 특례 검증·감정 방해시 특례 증거개시 거부시 특례		-	청구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 등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분배계획안 인가 불복		불복 불허	즉시항고
분배잔여금		피고에게 귀속	국고 귀속
배임수재죄		수수액에 따라 처벌형량 다름(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과 수수액 상당 금액 이하 벌금 병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참고 2

각국의 집단소송제도

■ 미국 - 집단소송(Class Action)

1. 의의

- 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을 대표하여 1인 또는 수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집단에 속하는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소송
- ②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라 시행되며 집단 구성원이 복수의 주 출신이거나 연방법 관련 문제인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3조)

2. 형태 ; 위법행위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3. 소제기요건

- ① 집단 구성원이 너무 많아 공동소송이 비현실적일 것 ②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있을 것 ③ 대표당사자의 주장과 항변이 집단 구성원 전원의 주장과 항변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 ④ 대표당사자는 집단 구성원 전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을 것

4. 소송절차

- ① 법원은 집단 소송 허가여부를 결정 ②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 법원은 소송의 성격 및 제외신청권리 등을 구성원들에게 고지할 것을 명함

*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 구성원이 신청에 의해 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외신청권리(opt-out)를 인정

5. 판결의 효력

법원이 집단구성원으로 정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음

6. 배상금의 분배

피고측이 출자한 자금에 의한 조성된 구제기금을 각 구성원에게 분배

■ 독일

1. 단체소송

개별 법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집단피해 구제소송을 수행

2. 법률서비스법(RDG) 및 민사소송법(ZPO)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RDG 규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일정한 소비자단체(소비자센터 및 기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소비자단체)는 업무 범위에서 소비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재판외에서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제2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 ZPO 규정(Zivilprozessordnung)

소비자단체는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이나 양도받은 채권을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제79조제1항제2문)

- 결론

결국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가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거나 채권을 양도받아 일괄하여 소구하는 집합소송 가능

* 다만, 독일법원은 개인소비자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재판상권리를 행사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위 규정에 의한 단체의 손해배상청구 인정에 소극적

3.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득환수청구권(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제도도입 ; 기존 소비자단체의 UWG 위반행위의 금지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당이득환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UWG를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의 이득환수청구권 도입

- 요건

① 사업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 ② 사업자에게 이득 발생 ③ 다수 구매자의 부담 ④ 인과관계

- 주체 ; 자격있는 소비자단체, 영업 및 자영업이익촉진단체,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

- 효과 ; 이득의 국고 귀속

- 비용상환청구 ; 소비자단체는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정부에 청구

■ 영국

1. 개관 ;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따라 '참가신고형(Opt-in 방식)' 만이 인정, 예외적으로 2015년 공정거래법 분야에 한해 미국식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제도를 도입

2. 참가신고형 제도(그룹소송·통합소송: group litigation)

- **의의** ; 2000년 민사소송규칙은 법원의 통합소송명령(Group Litigation Order)에 따라 공통 또는 관련 있는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발생시키는 다수의 청구를 통합하는 소송절차를 규정

- **기본절차**

① 당사자(원고·피고)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따른 통합소송명령으로 개시, ② 통합등록부에 통합되는 청구 및 당사자를 등록, ③ 통합소송을 심리할 관리법원을 지정·이송, ④ 판결의 효력은 그룹에 등록된 모든 당사자를 구속

3. 제외신고형 제도(집단소송: opt-out collective proceedings)

- **제도도입** ; 경쟁법 분야 소비자·기업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15. 1월 부당공동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금지 위반에 한정한 제외신고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2015년 1월 Consumer Rights Act of 2015의 제정을 통해 Competition Act of 1998을 개정

- **대표당사자** ; 집단의 일원 또는 경쟁항소법원(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이 대표당사자로 인정하는 자

- **대상** ; 경쟁법(Competition Act of 1998)상 부당공동행위(담합)·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위반행위 금지청구

- **절차** ; 경쟁항소법원의 전속관할로써 대표의 적절성, 사안 쟁점의 공통성 등 집단소송 허가절차를 거쳐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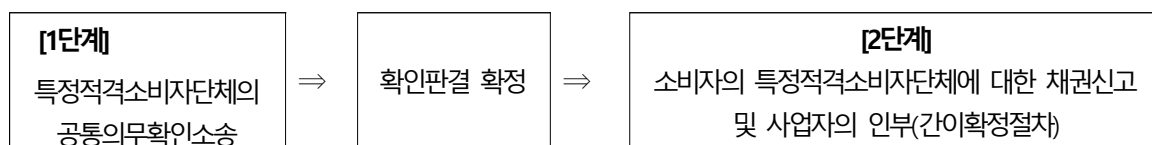
■ **일본 - 소비자집단소송제도**

1. 제도도입

2013년 12월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공통의무확인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절차특례법」 제정 (※ 3년 내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부터 시행 예정)

2. 구조

제1단계 절차인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제2단계 절차인 대상채권의 확정절차로 구성



3. 제1단계 - 공통의무확인 의 소

- 개념 ;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대상소비자의 수권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

- 근거규정

①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상당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② 이들 소비자에 공통되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③ 개개의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그 금전의 지급청구에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이들 소비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제2조 제4호)

- 당사자 ; 원고적격은 특정적격소비자단체, 피고적격은 사업자(제1단계, 제2단계 동일)

- 대상

‘소비자계약’에 관한 ① 계약상 채무의 이행청구 ②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 ③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③ ~ ⑤의 손해배상청구 중 확대손해, 일실이익, 인신손해, 위자료 등의 손해는 제외(제3조 제1항)

- 확정판결의 효력의 확장

① 당사자 ② 원고 외의 특정적격소비자단체 ③ 대상소비자로서 후에 간이확정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자에게 효력이 미침

4. 제2단계 - 간이확정절차

- 채권자 확정 절차

① 확인판결을 얻은 특정적격소비자단체의 간이확정절차 개시신청 → ② 법원의 개시결정 → ③ 대상소비자에게 통지 및 공고(대상소비자의 수권을 받기 위한 절차) → ④ 간이확정절차 신청단체의 채권신고 및 상대방의 인부(부인시 법원의 간이확정결정) → ⑤ 간이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시 소 제기 의제

- 효력

① 상대방이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신고소비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 가능 ② 간이확정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문 의 처

02)6788-5061